



The Journey of the Medicolegal Affairs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nd a Vision for Its Future: Towards Sustainable Progress Beyond Eighty Years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위원회의 여정과 미래 비전: 8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Jin Hwan Kim, MD*

Department of Rad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2, the Medicolegal Affairs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KSR)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Society'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otect the professional rights of radiologists. This article reviews the circumstances of the committee's establishment, its major activities, and the outcomes of its regulatory achievements, and makes suggestions regarding the committee's evolving roles and future directions in a rapidly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The committee has systematically revised Society's bylaws and regulations to improve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address new challenges, including medical law revisions, introduction of AI technologies, changes in medical data utilization, and increasing medical dispute prevalence. Going forward,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Society's leadership by promoting proactive and rational responses to emerging issues in medical practice, including AI and data ethics,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academic assets.

Index terms Korean Society of Radiology, Medicolegal Affairs Committe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Governance

Received October 12, 2025
Revised November 9, 2025
Accepted November 14, 2025

*Corresponding author
Jin Hwan Kim, MD
Department of Rad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82 Munhwa-ro, Jung-gu,
Daejeon 35015, Korea.

Tel 82-42-280-7838
Fax 82-42-253-0061
E-mail michelan@cn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법이나 규정은 영상의학과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정 글자의 삽입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명확성을 지향하면서도 정밀하고 세밀한 해석을 요한다.

한편, 최근의 의료 환경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의료데이터 활용의 확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 및 학회 활동 환경의 변화, 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 의료 분쟁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 진료 및 학회 회무를 함께 있어 여러 측면으로 새로운 법제적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80년 동안 영상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 제도적·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본 글에서는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위원회의 설립 배경, 주요 활동,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학회의 법제적 기능 발전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법제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법제위원회는 대한영상의학회의 80년 역사 중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로(1, 2), 영상의학 관련 의료법 및 학회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영상의학회 운영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3). 위원회는 위 목적에 맞추어 의료 관련 법규 및 제도, 학회의 회칙과 규정, 학회 각 위원회 및 회원의 법률 자문, 영상의학 관련 의료법 교육 및 홍보, 상임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법제위원회의 주요 활동

학회의 회칙 및 제반 규정 관련 활동

초기에는 학회 회칙, 각종 규정, 세칙의 관리뿐 아니라 의료법 관련 업무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의료법 관련 업무가 의무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법제위원회는 대한영상의학회 회칙 및 제반 규정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편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체계가 법적·제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는 규정 마련에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회 운영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4).

1) 2017년: 회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평생회원제도를 폐지하고, 연회비 납부 방식의 회원제도로 전환하였다.

2) 2020–2021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회의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에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형태의 평의원회 개최를 허용하도록 회칙을 개정하였으며 이로써 환경적 제약으로 인한 평의원회 개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참석률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2022년:

① 회칙 제14조 제①항을 개정하여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별도 분리·신설하고, 선출 방식을 전자투표(온라인 투표 포함)로 변경함으로 평의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회칙 제28조 제②항을 신설하여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협력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③ 공로 회원 추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영상의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공로 회원 제도의 실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④ 지회 및 산하 학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세칙을 제·개정함으로써 학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본 학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4) 2023년: 대한영상의학회 윤리지침 제정 및 규정 개정에 참여하였다.

5) 2024–2025년: 2024년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응하여 2025년 4월 16일, 수련위원회와 협력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세칙을 개정함으로써 논문 기준의 학문적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법제위원회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학회 운영 여건에 대응하여, 학회 회칙과 규정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영상의학회의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학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관한 업무

2022년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과 2025년 2월 4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확정 판결 이후, 한의사 단체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사 및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 X-ray, MRI를 포함하는 영상 진단 및 임상 적용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영상진단 분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법제위원회는 의무위원회와 협력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학회의 입장을 정립해 왔다.

2023년 4월 26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월례 회의에서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학회는 이 자리에서 해당 판결이 초음파 장비의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과 이를 임상 진단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구분하지 못한 법리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초음파 진단 분야에서 의학, 특히 영상의학이 갖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술적·법률적 관점 모두에서 학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은 한의사가 X-선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한의학계는

해당 판결이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골밀도측정기라는 특정 장비를 한의학적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피고 한의사가 영상 촬영 후 전문적 해석이나 판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현대의학적 진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모든 X-선 장비 사용을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국한되며, 영상의학적 진단과 판독은 이를 초과하는 의료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5).

2024년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초래하며 수련 환경 및 의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위원회는 현행 의료법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학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결과, 학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므로 집단행동 주도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의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근거와 해당 명령 불이행 시 의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적·사법적 조치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학회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상의학 관련 의료법의 교육 및 홍보 활동

법제위원회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법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친화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해 왔으며 특히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영상의학 업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4년도 춘계종합심포지엄에서는 법제 세션을 통해 영상의학 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및 의료정책 형성과정, 판독의 법적 책임, 자가 의뢰 및 원격의료·원격판독의 제도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2022년도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법제적 관점에서 본 판독소견서의 중요성'을 주제로 판독소견서의 법적 의미를 짚고 진료 현장에서의 법적 책임을 고려한 소견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202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모든 길은 법원으로 통한다'는 주제로 법제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의료법이 영상의학과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2025년 6월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종합심포지엄 필수평점교육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영상판독소견서 작성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의료분쟁'을 주제로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하여 영상의학과 의사의 법적 감수성을 높이고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한 판독 소견서 작성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위임 또는 전결사항

2023년도에 수련위원회의 '전공의 평가고사 문제 저작권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정 보완하

여 전공의 평가고사 문제를 번역, 음성 녹음, 웹사이트 게시, 전자책, 앱, 스마트러닝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hat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에의 2차 활용 절차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에는 「대한영상의학회 정보 제공 및 공유, 인공지능 도구 활용 연구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정책 과제를 수행하였다.

법제위원회 심포지엄 및 워크샵

위원회는 학회 회무 및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심포지엄과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일 시	제 목	주 제
2015년 11월 25일	법제위원회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검토 경과 보고 및 토의 대한영상의학회 '회원'의 정의 및 회비 납부에 관한 토의
2018년 12월 5일	법제위원회 mini-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위원회 역할 및 활동 소개 학회 회칙 규정의 원칙 및 실례 법제위원회 현안들 패널토의
2019년 11월 16일	의무·법제 심포지엄: 원격 판독의 국·내외 현황과 법적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판독 국내 현황과 법적 안정성 원격판독 국외 현황과 현실적 문제점 원격 판독의 법적 이슈 학회가 지향해야 할 원격 판독 환경 패널토의
2023년 5월 12일	법제 심포지엄: 영상의학과 관련 법규와 정책의 변화에 대한영상의학과의 대응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의학과 관련 법규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대응과 방향 영상의학과 회칙으로 본 학회의 조직과 미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및 대응방안 대한영상의학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법제적 시각: 차기 회장 의 로드맵
2024년 11월 21일	영상의학의 미래: AI 혁신과 윤리적 데이터 관리의 균형: 대한영상의학회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연구 보고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명처리의 중요성과 공유를 위한 최적화 전략 의료 교육자료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쟁점 영상의학회 데이터 자산의 전략적 관리: 공유 효율성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안 인공지능 활용과 데이터 보호의 교차점: 영상의학과 전문가의 경험담 패널토의

결론 및 제언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학회의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법적·제도적 대응을 수행해 왔다. 회칙과 각종 규정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학회 운

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의료법 개정,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 판결,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의 확대 등 다양한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회의 입장을 정립하였다. 또한 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심포지엄을 통해 회원의 법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학회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법제위원회는 영상의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한다.

학회 회칙 및 규정의 능동적 관리

법제위원회는 학회 회칙과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 관리 및 개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공고히 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유연하고 안전한 ‘디지털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이다. 학회 회무 중 전자 투표 및 온라인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가능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적용하여 스마트 회무 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학회 주관의 연구 또는 사업에서 회원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화 기준, 보안 프로토콜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회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할 것이다.

타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강화

법제위원회의 활동은 단독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우에 있어 타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각 위원회 및 학회의 법제적 대응력과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영상의학회는 80년의 전통을 넘어, 의료 및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며 사회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o disclose.

ORCID iD

Jin Hwan Kim  <https://orcid.org/0000-0002-1632-2421>

Funding

None

REFERENCES

1. Do KH. [80 years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leadership and vision for the future through changes in governance and bylaws]. *J Korean Soc Radiol* 2025;86:672-686. Korean
2. Korean Society of Radiology. [*The 80-year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1st ed. Seoul: Soulbooks 2025:118-121. Korean
3. Korean Society of Radiology. [*Regulations of the medicolegal affairs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Seoul: Korean Society of Radiology 2024. Korean
4. Korean Society of Radiology. Bylaws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vailable at. <https://www.radiology.or.kr/about/index.html?subid=3>. Accessed October 2, 2025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ule on the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Available at. <https://law.go.kr/lslInfoP.do?lslSeq=272877&viewCls=lslRvsDocInfoR#>. Accessed November 3, 2025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위원회의 여정과 미래 비전: 80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김진환*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위원회는 2012년 설립 이후 학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영상 의학 전문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본 글에서는 법제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 제도 정비의 성과를 고찰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제위원회는 학회 회칙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학회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의료법 개정, 인공지능(이하 AI) 기술 도입,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분쟁 증가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 법제위원회는 AI와 데이터 윤리, 의료정보 보호, 학술 자산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 새로운 의료 환경에 학회가 선도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